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 등의 수출 관련 협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방위산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방위사업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K-방산수출펀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제1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7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24명”을 “26명”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48명”을 “47명”으로 한다.

제6장의2(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24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99”를 “4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8”을 “41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89”를 “40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21”을 “7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21”을 “71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54”를 “643”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	0명
방위산업진흥국 1개 과	0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 · 방위사업정책국 · 방위산업진흥국 및 <u>국방기술보 호국</u> 을 둔다.	제10조(하부조직) ① ----- ----- ----- <u>국방기술개 발보호국</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u>국방기술보호국</u>) ① <u>국방 기술보호국</u> 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u>국방기술개발보호국</u>) ① <u>국방기술개발보호국</u> -----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설></u>	14. <u>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u>
제15조(직무) 미래 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직무)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 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 무</u>	<u><삭제></u>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① (생략)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	② -----

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법」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
술의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지원 업무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생략)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
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
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
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6명-----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

----- 47
명-----

-----.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제24조의2(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①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을 둔다. ②·③ (생략)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을 둔다. ②·③ (생략)	----- ----- <u>2028년</u> <u>12월 31일</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① ----- ----- ----- ----- <u>2028년</u> <u>12월 31일</u>-----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99</u>	<u>413</u>	+14
·	·	·	
일반직 계	<u>398</u>	<u>412</u>	+1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89</u>	<u>403</u>	+14
·	·	·	

[별표 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21</u>	<u>710</u>	-11
일반직 계	<u>721</u>	<u>710</u>	-1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54</u>	<u>643</u>	-1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6